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8. 18.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 건 요 지: 따로붙임

4. 검 토 의 견: 따로붙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3년 8월 27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충 일 대전광역시대전제3 ·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03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하자보수기간(5년)이 만료되어 시기적으로 시설재투자 비용의 적립이 요구되며, 타시·도 지방(국가) 산업단지에 비하여 면적비율이 70퍼센트로 높게 책정되어 입주업체간 부담률이 심하게 나타나 그 격차를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폐수종말처리장의 위수탁 운영 관계의 임의적 제한요소 개정 및 기본부과금 및 협의기준부담금 조항을 삽입함(안 제2조 제2호 제6호)
-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의 구체화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함(안 제19조)
- 다. 공단외 지역 생활하수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합리적 비용부담금 부과 기준과 비용부담금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라.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제34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대전제3·4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담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 시설재투자적립금에 있어서 7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타 시·도의 지방 및 국가산업 단지와 마찬가지로 배출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 산업단지외 생활하수의 처리근거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비용 부담금의 기준과 비용부담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동 조례안 검토결과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이 지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준공되었고,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은 지난 1992년 7월부터 시행되어 환경 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하자보수기간을 사유로 그동안 연차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됨